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3년 9월 13일

신한 BNPP 시니어론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1호(H)[대출채권-재간접형]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2013.08.29)
- 3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4 운용전문인력 현황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 C-d1 및 종류 C-d2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신설>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 가입자격: 종류 C-d1 매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수익자 종류 C-d2 매월, 매분기, 매반기 또는 매년 수익자가 정하는 비율 및 주기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수익자 <환매수수료> A.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입자격: 종류 C-d1 매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수익자 종류 C-d2 매월, 매분기, 매반기 또는 매년 수익자가 정하는 비율 및 주기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수익자 <보수> 종류 C-d1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500% B. 판매회사보수: 연 0.990% C. 신탁업자보수: 연 0.035% D. 일반사무관리보수: 연0.015% 종류 C-d2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500% B. 판매회사보수: 연 0.992% C. 신탁업자보수: 연 0.035% D. 일반사무관리보수: 연0.015% <환매수수료> A.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생략> 나. <신설>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생략> 나. 분배금의 지급 (1) 분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이하 관련 내용 생략>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다만,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예외 조항을 적용합니다.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자산을 외화자산으로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다만,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예외 조항을 적용합니다.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자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서신설></p>	<p>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간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연기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삭제></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간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수익자총회 결의사항</p>	<p>(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생략>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신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현행과 같음>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 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반대매수청구권</p>	<p>(4)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4)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2.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제5부 3. 집합투자 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정 기보고서</p>	<p>(2)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p>	<p>(2)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제5부 3. 집합투자 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 시공시</p>	<p>(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2.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신설)</p>	<p>(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2.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제5부 3. 집합투자 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 시공시</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추가)</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p>
<p>3.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p>	<p>-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3년 8월 31일)</p>
<p>4. 운용전문인력 현황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사항 가. 투자운용인력</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투자운용인력 - 최근현황갱신 (작성기준일: 2013.08.31.) -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작성기준일: 2013.08.31.)</p>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 2 운용전문인력 현황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가입자격: 종류 C-d1 매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수익자 종류 C-d2 매월, 매분기, 매반기 또는 매년 수익자가 정하는 비율 및 주기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수익자 <보수> 종류 C-d1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500% B. 판매회사보수: 연 0.990% C. 신탁업자보수: 연 0.035% D. 일반사무관리보수: 연0.015% 종류 C-d2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500% B. 판매회사보수: 연 0.992% C. 신탁업자보수: 연 0.035% D. 일반사무관리보수: 연0.015%</p>
<p>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p>	<p>제2부 1.보수 및 수수료 라. <신설></p>	<p>제2부 1.보수 및 수수료 라. 분배금의 지급 (1) 분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이하 관련 내용 생략></p>
<p>2. 운용전문인력 현황 업데이트: 제1부 5.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가. 투자운용인력</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투자운용인력 - 최근현황갱신 (작성기준일: 2013.08.31.)</p>

집합투자규약 변경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 2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로 인한 분배금 관련내용 추가
-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2013.08.29)

항목	변경전	변경후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종류 명칭 및 투자자격> <생략>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종류 명칭 및 투자자격> <현행과 동일> <신설>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 가입자격 종류 C-d1 매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수익자 종류 C-d2 매월, 매분기, 매반기 또는 매년 수익자가 정하는 비율 및 주기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수익자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7.-8. <신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7.종류 C-d1 수익증권 8.종류 C-d2 수익증권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제39조(보수)	제39조(보수) ① ~ ② < 생략 > ③ 7.-8. <신설>	제39조(보수) ① ~ ② < 현행과 같음 > ③ 7. 종류 C-d1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500% B. 판매회사보수: 연 0.990% C. 신탁업자보수: 연 0.035% D. 일반사무관리보수: 연0.015% 8. 종류 C-d2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500% B. 판매회사보수: 연 0.992% C. 신탁업자보수: 연 0.035% D. 일반사무관리보수: 연0.015%
1. 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 제41조(환매수수료)	제41조(환매수수료)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1 수익증권, 종류 A-e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B.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 2. 종류 C1 수익증권, C-e 수익증권, C-i 수익증권, C-w 수익증권 A.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제41조(환매수수료)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1 수익증권, 종류 A-e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B.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 2. 종류 C1 수익증권, C-e 수익증권, C-i 수익증권, C-w 수익증권, C-d1 수익증권, C-d2 수익증권 A.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2.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로 인한 분배금 관련내용 추가: 제1조 (신탁계약의 목적)	제1조 (신탁계약의 목적) <신설>	② 이 투자신탁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다양한 경제변수 및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다.

<p>2.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로 인한 분배금 관련내용 추가: 제33의2(분배금)</p>	<p>제33의2(분배금) <신설></p>	<p>제33조의2 (분배금)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서 해당 종류 수익증권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한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이하 내용 생략></p>
<p>2.종류 C-d1 및 C-d2 수익증권의 신설로 인한 분배금 관련내용 추가: 제33의3(분배금의 지급연기)</p>	<p>제33의3(분배금의 지급연기) <신설></p>	<p>제33조의3(분배금의 지급연기) ①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분배금 미지급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 생략></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p>	<p>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2.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 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2.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 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22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p>	<p>제22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2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37조 (수익자총회)</p>	<p>제37조 (수익자총회) ①~⑤(생략) ⑥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p>	<p>제37조 (수익자총회) ①~⑤(현행과 같음)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38조 (반대수 익자의 매수청구권)</p>	<p>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④ (생략)</p>	<p>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p>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②~④ (현행과 같음)</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p>	<p>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1.~2.<생략></p> <p>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신설)</p> <p>4. <생략></p>	<p>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1.~2.<현행과 같음></p> <p>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47조 (투자신탁의 합병)</p>	<p>제47조 (투자신탁의 합병)</p> <p>① (생략)</p>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제47조 (투자신탁의 합병)</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p> <p>①~④(생략)</p> <p>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p> <p>①~④(현행과 같음)</p> <p>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p>